

# 직원재심위원회 규정

제정일 : 2020. 12. 16.

담당부서 : 법인사무국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(이하 “법인”) 정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및 학교의 일반직원(이하 “직원”)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원재심위원회(이하 “재심위원회”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재심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재심위원회 조직)** ① 재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법인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 제1징계 위원은 예외로 하되 대상자 재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④ 재심위원회 회의는 이사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**제4조(위원장 선출 및 직무)**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재심청구)** 「직원징계위원회 규정」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교부받은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의하여 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재심위원회의 심사)**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재심위원회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**제7조(심사의 범위)**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인이 될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
**제8조(재심청구인의 진술권)**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.

**제9조(재심위원회의 결정)**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.

**제17조(운영세칙)** 재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